

의안번호	2210148
의 퇴 인	박정하 의원
회 답 일	2025. 5. 13.
추 계 번호	25G245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
적용기한 5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21조의33제1항 (기회발전특구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	○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(개정안) 2031.12.31.
2	안 제121조의34 (기회발전특구로 이전 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)	○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- 대상: 수도권에서 3년(중소기업 2년)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인 - 감면내용: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을 위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기회발전 특구 내 사업용부동산 처분 시까지 이연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년 12월 31일 (개정안) 2031년 12월 31일
3	안 제121조의 35 (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 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 세특례)	○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- 대상: 기회발전특구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등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 등에 10년 이상 투자한 투자자 - 감면내용: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 10년간 9% 분리과세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년 12월 31일 (개정안) 2031년 12월 31일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1조의33제1항 (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1조의34 (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 업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121조의 35 (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 자자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에 따른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감소가 예상됨
 -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되는 지역을 의미함
 - － 대전광역시(유성구), 부산광역시(동구·남구 등), 대구광역시(달성군·북구 등), 울산광역시(울주군 등), 세종특별자치시(연서면 등), 강원특별자치도(강릉·원주·영월·동해 등), 충청남도(보령·예산·서산 등), 충청북도(진천·제천·보은 등), 전북특별자치도(김제·전주 등), 전라남도(광양·여수 등), 경상북도(포항·구마·상주 등), 경상남도(고성·통영 등), 제주특별자치도(서귀포)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①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실적, ②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 규모 및 과세이연 기간, ③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·배당소득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함
 - 그러나 동 과세특례는 2023년 말 법 개정¹⁾을 통해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조세지출 실적이 아직 집계되지 않아 과세 실적을 참고하여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함
 - 또한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양도소득 규모 및 과세이연 기간을 파악할 수 없으며, 향후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·배당소득 규모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1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[2023. 12. 31. 법률 제19936호 일부개정]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